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77
----------	-------

발의연월일 : 2025. 7. 15.

발 의 자 : 안철수 · 김형동 · 김승수
이종욱 · 서천호 · 김상훈
최보운 · 김예지 · 박정하
김성원 · 조승환 · 송석준
최은석 · 김은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 일정 구역에 대하여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은 건축물 등의 높이를 측정할 때,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는 해당 건축물 등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행안전구역 내 고저차가 있는 경사지에서 공동주택 등 규모가 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가장 낮은 부분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에서 45미터이지만 가장 높은 부분에서는 지

표면의 고저차만큼 건축물 높이가 낮아져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허용 높이 45미터까지 건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합리적인 건축계획이 어렵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의 지표면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 정의로 신설하는 한편, 경사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높은 부분의 지표면에서 그 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행안전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지표면”이란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말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일정 구역의 지표면”을 “일정 구역의 지표면(해당 건축물, 공작물 또는 식물 등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높은 부분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제2항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5. (현행과 같음) 16. “지표면”이란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말한다.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일정 구역의 지표면 (해당 건축물, 공작물 또는 식물 등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높은 부분의 지표면을

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략)

<신설>

말한다)-----

----- . <단서 삭제>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 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

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

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제2항에 따른 높이

④ · ⑤ (생 략)	<u>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 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 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 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 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 용한다.</u> ④ · ⑤ (현행과 같음)
--------------------	---